

제 3 4 4 호

1973. 2.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덕 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 8 3 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 보

차 례

이 양구보준규칙을 마지막으로
따라오도록 개정하였다.

1973. 2. 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 규 칙
제 1289 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3
- ◎ 고 시
제 18 호 도시계획 세 부과지역 고시 4
- ◎ 공 고
제 12 호 1972 년도 3 급전기주임기 술자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5
- 제 15 호 소원재 결서공시송달 12
- ◎ 사 령 1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	---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1월 31일

⑤ 서울특별시규칙 제 1289 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내지 제 9 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비상계획관) 비상계획관 밑에 방호과, 안전과와 동원과를 두고 비상계획관은 별정직 (2급갑류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방호과장은 별정직 (3급갑류상당) 국가공무원으로, 안전과장과 동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9 조 (방호과) ① 방호과에 계획계, 운영계와 상황계를 두고 계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계장과 상황계장은 별정직 (3급을류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호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계

- 가. 국소관 업무의 종합조정
- 나. 총무계획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과 조정통제 (동원분야제외)
- 다. 총무계획사업 심사분석
- 라. 과내 서무 및 관내 타과, 제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계

- 가. 보호구역관리
- 나. 보안관리
- 다. 중요시설경비지도
- 라. 특정문제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상황계

- 가. 지하 지휘소운영
- 나. 비상통신망 운영유지
- 다. 정부 연습실시 및 민방공훈련 통제
- 라. 총무계획을 위한 자료수집 및 계획회득유지

제 9 조의 2 (안전과) ① 안전과에 관리계와 방재계를 두고 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계

- 가. 안전 및 방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통제

- 나. 안전기준의 설정
- 다. 안전관계법령 정비
- 라. 안전위원회 운영
- 마.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방 재 제

- 가. 재해대책본부 운영
- 나. 방재훈련 실시
- 다. 안전진단 및 진단결과의 조치
- 라. 재해 및 사고통계와 요인분석
- 마. 재해 및 사고발생 사후대책의 조정통제

제 9 조의 3 (동원 과) ① 동원 과에 동원제 1 제와 동원제 2 제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동원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원제 1 제

- 가. 국가동원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조정통제
- 나. 동원소요 및 능력판단과 자원관리
- 다. 비축계획의 조정
- 라. 전시법령 정비
- 마. 방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원제 2 제

- 가. 인력 (병력, 근로) 동원분야 계획수립과 조정통제
- 나. 향토예비군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군 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병사관계 지원사항

제 14 조 제 2 항 제 2 호 말미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공무원의 비밀취급인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④ 서울특별시고시제 18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조례제 3 조제 3
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부칙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고 시 사 항

1973 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중 서울특별시 행정 관할 지역으로
합니다.

1973 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2 호

1972 년도 3 급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서울특별시 공고제 220 호 (1972 .

9 . 28) 및 서울특별시 공고제 2 호
(73.1.10) 에 의하여 실시한

1972 년도 3 급 전기주임 기술자자격
검정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1973 년 1월 27 일

서울특별시장

1. 최종 합격자명단

(응시자성명생략)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	6	13	24	37	41
3	9	21	31	38	47
5	12	22	36	39	48

옥 시 번 호	옥 시 번 호	옥 시 번 호	옥 시 번 호	옥 시 번 호	옥 시 번 호
52	128	222	303	359	452
54	129	223	304	360	453
55	135	224	305	361	454
56	137	229	313	364	455
58	138	232	314	365	463
61	148	233	315	370	465
64	154	237	316	382	471
68	156	242	317	385	473
69	157	250	318	386	474
73	158	260	319	388	476
74	159	262	322	399	478
79	161	266	324	402	481
86	162	268	329	409	484
87	165	278	330	412	485
90	175	279	331	416	493
92	176	280	332	419	495
96	177	281	334	420	496
98	179	282	335	423	501
99	191	284	337	425	502
100	195	285	340	430	503
105	205	290	342	432	510
110	210	293	344	441	512
116	213	295	347	447	517
122	217	297	349	449	519
124	218	298	354	450	520
125	220	301	358	451	524
127	221				527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530	585	626	669	736	796
531	587	627	670	737	797
532	588	628	676	738	798
534	589	629	682	739	800
537	594	630	687	741	801
538	595	633	691	742	803
545	596	634	692	744	807
547	598	635	695	756	809
548	599	636	696	759	810
550	600	637	697	762	811
551	602	641	698	763	814
553	604	642	699	765	817
555	607	643	700	766	819
556	608	644	701	767	825
560	609	645	704	771	826
561	610	646	705	772	828
562	612	647	708	773	830
564	613	648	710	776	831
572	614	649	711	780	832
574	616	650	712	782	833
576	617	653	713	783	839
579	621	655	717	785	840
580	622	657	719	790	848
581	623	659	726	792	849
582	624	663	731	794	852
584	625	666	733	795	861

17-8 제 344 호

시 보

1973.2.1

우 수 번 호	우 수 번 호	우 수 번 호	우 수 번 호	우 수 번 호	우 수 번 호
870	951	1013	1083	1195	1324
871	952	1014	1085	1196	1325
872	953	1019	1086	1200	1327
873	954	1020	1087	1201	1332
874	955	1021	1088	1204	1335
880	956	1022	1089	1206	1337
881	958	1026	1093	1207	1338
882	965	1028	1099	1209	1341
884	968	1029	1110	1215	1343
888	969	1033	1116	1221	1350
889	971	1038	1117	1224	1352
894	974	1039	1121	1231	1356
896	975	1043	1123	1232	1360
898	980	1047	1125	1234	1374
899	981	1048	1128	1237	1378
906	982	1049	1131	1252	1382
914	983	1052	1145	1272	1384
916	985	1053	1155	1282	1385
918	993	1055	1161	1285	1386
923	994	1057	1175	1292	1387
927	998	1062	1178	1295	1391
929	999	1072	1184	1302	1398
931	1000	1073	1185	1306	1406
937	1001	1074	1186	1308	1407
939	1002	1076	1190	1317	1408
946	1003	1078	1191	1319	1409
950	1012	1081	1192	1320	1410

제 344 호

시 보

1973.2.1 17-9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1411	1506	1653	1753	1821	1904
1415	1508	1656	1754	1825	1909
1417	1512	1669	1757	1836	1921
1422	1525	1677	1761	1840	1924
1425	1526	1681	1762	1844	1928
1430	1531	1682	1763	1846	1934
1433	1532	1687	1764	1854	1935
1434	1533	1688	1765	1856	1938
1449	1536	1690	1766	1861	1946
1450	1541	1696	1767	1862	1967
1461	1550	1708	1780	1865	1978
1470	1553	1710	1782	1867	1980
1473	1554	1711	1787	1870	1981
1476	1558	1714	1789	1871	1982
1478	1559	1715	1790	1872	1983
1479	1560	1717	1791	1877	1994
1480	1564	1722	1792	1879	1996
1481	1571	1726	1795	1886	1998
1489	1585	1727	1796	1889	2001
1494	1590	1728	1797	1891	2003
1496	1595	1737	1798	1892	2004
1497	1605	1738	1799	1894	2029
1498	1606	1739	1810	1895	2033
1500	1609	1742	1815	1898	2039
1502	1613	1746	1816	1899	2041
1504	1650	1749	1818	1901	2045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2050	2122	2189	2331	2456	2557
2055	2124	2203	2335	2462	2558
2056	2126	2221	2338	2467	2560
2063	2127	2222	2349	2473	2561
2067	2128	2223	2350	2478	2562
2075	2129	2238	2352	2485	2563
2076	2130	2239	2354	2494	2565
2077	2131	2248	2356	2497	2566
2079	2133	2251	2359	2498	2567
2080	2136	2257	2379	2500	2568
2082	2138	2260	2380	2502	2569
2085	2140	2266	2381	2503	2570
2086	2141	2283	2382	2510	2571
2088	2142	2286	2383	2514	2572
2097	2144	2287	2384	2520	2580
2101	2145	2288	2387	2521	2582
2105	2147	2290	2393	2523	2584
2107	2154	2304	2394	2533	2587
2108	2161	2314	2416	2535	2588
2112	2171	2322	2439	2538	2595
2114	2173	2323	2442	2539	2596
2115	2174	2324	2443	2540	2597
2117	2175	2325	2444	2549	2608
2119	2180	2326	2451	2551	2610
2120	2182	2327	2454	2553	2628
2121	2186	2328	2455	2556	2641

제 344 호

시

보

1973.2.1

17.11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2650	2764	2828	2874	2975	3065
2667	2765	2831	2879	2977	3067
2680	2767	2837	2897	2982	3071
2691	2770	2845	2903	2984	3071
2692	2773	2848	2905	2992	3085
2705	2775	2849	2914	2999	3087
2708	2784	2851	2919	3002	3087
2721	2801	2852	2942	3004	3091
2731	2803	2853	2943	3016	3097
2732	2806	2859	2947	3019	
2751	2819	2861	2954	3029	
2759	2823	2865	2958	3051	

2.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서류

(1) 사진 2매 (사진규격 최근 3개월내 촬영한 3×3 촬영부분)

(2) 학력증명 1매

가) 졸업예정자 증명 제출자는 졸업증명

나) 재학증명 또는 수료 예정증명 제출자는 수료증명 (대학 3년 수료증명)

(3) 경력증명 제출자

가) 전기공 체 근무자는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사진 복사된것) 1매

나) 제 2종 자가용 전기공학물 인가업체 근무자는 인가증 사본 1매

나. 제출기간 : 1973.2.20-73.3.5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산업국 연료과

3. 면허증 교부방법

상기 제 2 항에 의한 제출서류 확인된자 순으로 교부합니다.

(1) 교부기간 : 1973.2.20-73.3.20

4. 불합격자는 1972년 12월 28일 실시한 3급 전기주임 기술자 자격검정 1차 (필기) 시험 합격증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인장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기간 : 1973.2.1-1973.2.28

나. 교부장소 : 서울특별시 산업국 연료과

5. 기타사항

최종 합격자중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령 제 15조제 의한 응시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허증 교부후라도 합격을 취소 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15호

소원재결서 공시 송달

역촌토지 구획정리 지구내 다음 소유자가 제출한 소원장의 재결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소원인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반송되었으므로 이를 소원법 제 12조 및 민사소송법 제 180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537-3

2. 성명 : 김 재 호

3. 소원재결서 : 별지사본 참조

소 원 재 결 서

사 건 72-112 환지 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원인 성명 김 재 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537-3

처분청 : 서울특별시 장

위 사람이 1972. 10. 30 처분청을 경유하여 당 재결 행정청에 제기한 소원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원심의회 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이 소원을 기각한다.

이 유

1. 본건 소원의 이유요지는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은 1972. 10. 10 소원인에게 금 98,342원을 환지청산금으로 부과하였는바, 가.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후 부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아니

한채 청산금만 부과시킨 것은 위법이며, 나. 감보율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현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니 이를 시정할 것이며, 다. 거액의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니 이자없이 연부도 납부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변경하

여 달라는데 있으나

2. 일전 기록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가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6 조 제 1항 및 동법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동법 제 68 조의 규정에 준하여 환지 가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70. 10. 21 환지에정지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3 호) 를 한후 위법의 규정에 의거 1972. 10. 10 본건 환지 가청산금을 적법히 부과한 사실과 동 사업계획에 의하면 1973. 12. 30 까지 본건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소원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항에 대하여

환지감보율은 처분청이 사업시행

규정 및 사업계획안에 이를 정한후 그 시행에 관하여 1968. 11. 5. 건설부장관의 인가 (건설부 공고 제 140 호) 를 받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원인의 토지에 적용한 감보율이 부당하게 과도히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토지가격의 평가 역시 부당하게 고가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원인의 주장은 이점 역시 이유없다.

다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68 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은 소정의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은 공익사업 수행의 필요상 이를 이자 없이 연부로는 징수할수 없다는 결정을 종합하여 볼때 소원인의 주장 중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무이자 연부분할 납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각 항을 종합하여 볼때 소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령

◎ 1973. 1. 30.

대 구 시 지방경제기사보 김중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경제기사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박종국

지방경제기사에 임함.

4 급 13 호봉을 급함.

상정과 근무를 명함.

◎ 1973. 1. 31

김현수

기한부공무원 (지방토목기원보
유방희의 군복무 휴직기간중)
을 명함.

5 급 3 호봉을 급함.

구획정리 제 1 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유신자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조옥자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 지방토목기사 홍성주
수도사업소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사 박석규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사 안근철
수도사업소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근무
를 명함.

역청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김선중
서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3. 2. 1

전 북 지방행정서기 김학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 손용옥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청소제 2 과 지방행정주사 유부곤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1/-16

제 344 호

시

보

1973. 2. 1.

용 산 구 지방행정주사 정 옥 주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 이재 을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박 원 서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한 건 상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한 능 국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개 량 과 지방행정주사 조 윤 희
업무과 (상수도특별기동반요원)
파전 근무를 명함.

하 수 과 지방행정주사보 오 철 원
업무과 (상수도특별기동반요원)
파전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동 일
업무과 (상수도특별기동반요원)
파전근무를 명함.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보 현 승 주
성동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이 석 중
예산과파전 (73.2.1-73.3.30
까지) 근무를 명함.

농림부국립 행정주사 최 두 식
동물검역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경 남 지방행정서기보 양 채 용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운수사업과 지방행정주사 조재 호
예산과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행정주사 최영 태
수도사업소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보건예방과 지방행정주사 김 순 기
예산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농림지원보 김 학 초
전라북도 전출을 명함.

자동차정비장 지방기계기사 백 형 호
시민회관 파전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전 공 홍준 원
시민회관 파전근무를 명함.

기 전 과 전 공 이 영 기	계획운영과 조건부지방통신기사보 비광조
시민회관 파견근무를 명함.	방호과 근무를 명함.
녹 지 과 난 방 공 이 은 중	계획운영과 조건부지방통신기원보 권영은
시민회관 파견근무를 명함.	방호과 근무를 명함.
환경순찰관 사 진 사 한 순 구	민방위과 지방전축기사보 양승학
시민회관 파견근무를 명함.	방호과 근무를 명함.
시 민 회 관 지 방 기 계 기 사 백 형 호	김 평 진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에 임함.
시 민 회 관 지 방 전 기 기 사 홍 중 석	15 호봉을 급함.
운동장 근무를 명함.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시 민 회 관 지 방 전 기 기 사 유 정 현	김 중 수
미아리 보조수원지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에 임함.
시 민 회 관 지 방 전 기 기 원 보 장 정 기	10 호봉을 급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시 민 회 관 기 한 부 공 무 원 위 창 양	정 영 진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에 임함.
경기전신전 동신기원보 김 두 수	4 호봉을 급함.
화 전 설 국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지방통신기원보에 임함.	시 민 회 관 (4 등 급) 지 방 기 관 수 이 원 기
2 호봉을 급함.	방역사무소 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시 민 회 관 (5 등 급) 지 방 전 기 수 김 봉 순
계획운영과 지방통신기사 김 홍 경	운동장 근무를 명함.
방호과 근무를 명함.	시 민 회 관 (6 등 급) 지 방 전 기 수 이 홍 록
서울특별시	운동장 근무를 명함.
장	